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직권 촉탁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촉탁업무의 원활화 및 민원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건물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물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와 분할·구분· 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5조의 2제2항제4호 및 제5호)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유형을 정리함(안 제5조의2제2항제6호)

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 - 1640